

서울고등법원 2016. 1. 29 선고 2015나205492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6. 1. 29 선고 2015나205492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0 선고 2014가합52660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C

변론 종결 2015. 11. 27.

판결 선고 2016. 1. 29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가합52660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[청구취지]

B와 피고 사이에 2013. 12. 9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71,508,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1,508,9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신광렬

판사이정환

판사이영창

별지